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2020년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자 모집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키위유통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사업량 : 1개소 내외
- 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600, 자담 400)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사업 주요내용 : 노후 참다래 선별기 교체 지원

2. 지원 대상 사업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문의처 |
|----|--------------|--------|----------------------|--------------------------------|
| 1 |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 | 1개소 내외 | 2020. 1월 ~ 2020.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710-3263) |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16. ~ 1. 31.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도청 감귤진흥과 방문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증빙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 064) 710-3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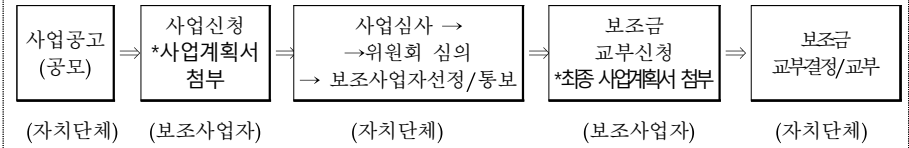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심사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 지원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의함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064-710-3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진흥과 | 과장 전병화 | 064-710-3190 |
| | | 사무관 임영준 | 064-710-3261 |
| | | 주무관 송은미 | 064-710-3263 |

I 사업목적

- 전국 참다래 유통량의 39.5%를 차지하는 제주산 참다래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감귤에 이은 제2의 과수산업으로 육성
→ (면적) 311ha(전국 1,347ha의 23%), (생산량) 8,325톤(전국 21,075톤의 39.5%)
- 선진유통시설의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당도 참다래 유통 도모

II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I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량 : 1개소 내외
- 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600, 자담 400)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사업 주요내용 : 노후 참다래 선별기 교체 지원

2. 사업대상자

- 키워유통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단, 농업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IV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 16(목) ~ 1. 31(금)
- 신청장소 : 도청 감귤진흥과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 1), ② 사업 계획서(서식 2), ③ 단체 소개서(서식 3), ④ 구성원 현황,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⑦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5인 이상), ⑧ 조합원명부, ⑨ 출자금 통장 사본, ⑩ 최근2년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재무제표, ⑪ 견적서, ⑫ 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관련), ⑬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2. 대상자 선정

- 도 자체 심의 : 2020. 2월중
- 【붙임 1】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V 사업추진 요령

1.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는 대상자 선정통보 직후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후 자부담 입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받은 이후 사업 추진

2. 사업 수행업체 선정

-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적용하여 선정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추진
 - 선별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
- * 단,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이상일 경우 예외

3.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4.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 반드시 법인 명의로 통장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 않음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고, 검수 후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선별시스템 설치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 검수: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보조금 교부는 사업대상자 보조금 전용통장에 계좌 입금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 가능하며, 업체계약 시 착수계 제출,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업완료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금을 집행한 후, 정산서 제출

5.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에 따른 대금 집행 후 보조사업 정산서 30일 이내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자체 보조사업은 회계검사서 첨부

6.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기계·장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이 장비(기계)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 처분제한기준 |
|------------------------|--------|------|--|
| | 부터 | 까지 | |
| · 부동산(토지, 건물, 하우스골조 등) | 준공일 | 10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 ·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 준공일 | 7년간 | |
| · 주요기계, 장비, 자재 | 준공일 | 5년간 | |

VI 행정사항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키워관련 농업법인에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안내 : '20. 1. 31일까지 도 감귤진흥과로 전달

【서식 2】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 | | | |
|-------|--|---------|--|
| 명 칭 | | 대표자 성명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조직결성일 | | 조 직 원 수 | |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 | | | | |
|---|----|--|--|--|
| 계 | 직급 | | | |
| | | | | |

다. 출자 현황

| | | | | |
|------|------|-----|-----|-----|
| 출자자수 | 총출자액 | 평 균 | 최 고 | 최 저 |
| 명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라. 전년 사업실적

| 품 목 | 출 하 량(톤) | | | | GAP, 친환경인증(톤) | 상표명 | 주요출하처 |
|-----|----------|----|----|--------|---------------|-----|-------|
| | 계 | 수탁 | 매취 | 기타(수출) | | | |
| 계 | | | | | | | |

* 주 1)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유통시설 보유현황

| 집하시설 | 선별(과) 시설 | 저 온 저장시설 | 일반창고 | 예냉시설 | 선별(과)기 |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
|----------------------------|----------------------------|----------------------------|----------------------------|----------------------------|----------|-------------|
| 동 m ² () | 동 m ² () | 동 m ² () | 동 m ² () | 동 m ² () | 조 () | () |

* 주 1)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100%) | 지방비 | 자부담 |
|---------|----------|-----|-----|
| 사업비(계) | | | |
| - 선별시스템 | | | |
| - | | | |

○ 시설 설치계획

| 구 분 | 사업량 | 단 가 | 사업비 | 처리능력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 비 고 (제작회사) |
|-------|-----|-----|-----|---------|-------------|------------|
| ○ 기 계 | | 천원 | 백만원 | | | |
| - 선별기 | 조 | | | 처리능력/시간 | | |
| - 포장기 | 대 | | | " | | |
| - 컨베어 | 대 | | | | | |

* 주 1)사업비 입증자료(상품설명서, 견적서 등) 첨부

나. 사업추진일정(계획)

- 착 공 :
- 준 공 :

* 주 1)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 품목 | 조직원 생산기반 | | | 사업물량(당해연도) | | | |
|----|----------|----|----|------------|----------|----|----|
| | 조직원 수 | 면적 | 물량 | 계 (A+B) | 물량 확보 계획 | | |
| | | | | | 수탁 (A) | 매취 | |
| | | | | 물량(B) | | 금액 | |
| 키위 | 명 | ha | 톤 | 톤 | 톤 | 톤 | 천원 |

나. 사업물량 처리

| 품목 | 사업물량 | 사업기간 | 출하처비율(%) | | | 선별비율(%) | |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
|----|------|------|----------|---------|----|---------|-----|----------------------|
| | | | 시장출하 | 직공급(납품) | 기타 | 기계선별 | 수작업 | |
| | | | | | | | | |

- * 주 1)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2)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 자금확보계획

| 법인명 | 금액 | 부담자 | 부담방법 |
|-----|----|-----|--|
| | | |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

6. 향후 마케팅 전략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서식 3】

단체 소개서

[단체명 : _____]

| | | | | |
|--------------|---|------------------|-----------------------------------|--|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12345) | | |
|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
| | 회 원 수 |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 | |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
| 2020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수익(%), 기타(%) | | | |
| 2019 주요사업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 |
| 2020 주요사업 계획 |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 | |

【붙임 1】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 선정 심사표

| | | | |
|--------|---------------------|------|--|
| 신청 조직명 | | 신청내용 | |
| 신청 사업비 |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

□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 배점 | 평점 | 비 고 |
|--------------------|-------------------------------------|-----|----|------------------------|
| 기존 선별기 노후화정도 (40점) | ① 설치년도 10년 이상 (2010년 이전 설치) | 40 | | 증빙자료 확인 |
| | ② 설치년도 9년 이상 (2011년 이전 설치) | 25 | | |
| | ③ 설치년도 8년 이상 (2012년 이전 설치) | 10 | | |
| 기지원현황 (30점) | ①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 30 | | 민간보조 시스템 |
| | ②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100백만원 미만 | 20 | | |
| | ③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100백만원 이상 | 10 | | |
| 조직원 구성현황 (20점) | ① 조직원 100명(키위재배 농업인) 초과 | 20 | | 증빙자료 확인 |
| | ② 조직원 50명(키위재배 농업인) 이상 30명 미만 | 18 | | |
| | ③ 조직원 30명(키위재배 농업인) 이하 | 15 | | |
| 출하실적 (10점) | ① 2년 평균 키위 출하실적 2,000톤 초과 | 10 | | 증빙자료 확인 (18-19년산 출하실적) |
| | ② 2년 평균 키위 출하실적 1,500톤 이하 2,000톤 이상 | 8 | | |
| | ③ 2년 평균 키위 출하실적 1,000톤 초과 1,500톤 미만 | 5 | | |
| 점수 합계 | | 100 | | |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선별기 노후화정도, ② 기지원 현황 고득점자, ③ 참여농가 많은 조직 순으로 함